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27
----------	----------

발의일자	2017. 4. 3.
발 의 자	변상원의원 외 5명

1. 제정이유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라.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마. 지원 신청 규정(안 제7조)
- 바. 지원 결정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연간 59,400천원 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 . ~ . . .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불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교 지원 및 육성에 따른 교육, 행사,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관련 조문 : 제6조(사업비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66	66	66	66	66	330
세출	국비	0	0	0	0	0	0
	도비	6.6	6.6	6.6	6.6	6.6	33
	군비	59.4	59.4	59.4	59.4	59.4	297
	소계(a)	66	66	66	66	66	330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3. 관련 의견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인의예지충효를 실천하는 선조들의 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교육 및 행사 지원

- 각종 교육 및 전통계승 행사 지원: 59,400천원/연간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관 련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9.] , (제정) 2015-07-09 조례 제 4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 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경상남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